

## 재해개요

2021. 7. 6.(화) 9:54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창호 유리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기울면서 전도되어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던 재해자 2명이 약13m 아래로 떨어져 1명 사망, 1명 부상

### 【 유사 재해사례 】

- ◆ 2021. 8. 5.(목) 11:35경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소재 전기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절연고소작업차(3.5톤)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을 위해 붐(Boom)을 회전하던 중 절연고소작업차가 전도되면서 추락하여 사망
- ◆ 2021. 3. 31.(수) 14:50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발수코팅작업을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붐대를 연장하던 중 아웃트리거를 지지하던 지반이 침하하여 차체가 기울면서 고소작업대에 탑승중이던 재해자가 추락하여 사망

## 재해상황도



< 사고발생 장소 >



<고소작업대 설치상태>

## 재발방지대책

-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
  - 고소작업대가 허용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 작동이 멈추거나 알릴 수 있게 방호장치의 임의 해체를 금지하고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.사용
- 고소작업대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
  - 작업대에 작업자가 탑승하는 경우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 후 작업 실시
-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철저
  -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 및 작업대에 안전고리를 체결한 후 작업하도록 관리.감독 철저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
  -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.낙하.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실시
  -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장소와 작업 구간, 작업 반경 등을 검토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